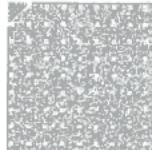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수신 학교법인 [REDACTED] 학원(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경유)

제목 소청심사 청구 결정 통지(2019-570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귀 기관 소속 [REDACTED] 대학교 부교수 [REDACTED]이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2019. 12. 26. 불임의 결정서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불임 결정서 1부. 끝.



정책연수과 주
무관 이예슬
교원소청심사 위원회 위원장 이진석

사무관

장현별

심사과장

김효신

상임위원

오석환

협조자 이진석

시행 심사과-287

(2020. 1. 7.)

접수

우 41062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0, 정책연수과 (신서동) / <http://www.ace.go.kr>

전화번호 053-980-6565 팩스번호 053-980-6742 / yeseul01@korea.kr / 비공개(6)



결정서

사건 : 2019-570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REDACTED]

소속 [REDACTED] 대학교 직위 부교수

피청구인 : 학교법인 [REDACTED] 학원

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강민정, 오범석

심사일 : 2019. 12. 26.(출석)

결정일 : 2019. 12. 26.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19. 8. 1.자 직위해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9. 8. 19.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 경과

가. 청구인은 2005. 3. 1. [REDACTED] 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1. 10.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2017. 9. 29. [REDACTED] 대학교에 청구인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음을 통보하였고, 2018.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에 청구인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9. 6. 12. 청구인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징역 8월의 형을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REDACTED] 대학교총장은 2019. 7.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중징 계의결 및 직위해제를 제청하였다.

마. 피청구인 이사회는 2019. 7. 30. 청구인에 대한 중징계의결요구 및 직위해제를 의결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9. 7. 30. 청구인에게 2019. 8. 1.자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2. 처분 사유

가. 직위해제(2019. 8. 1.자)

나.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3호 및 계원학원 「정관」 제44조 제1항에 의거 직위해제함

다.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 ○○○에게 도달하게 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으며, 2019년 6월 12일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판결을 받았음

3.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여 제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지만,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나.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

칙이나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기소된 위법사실에 대한 형량이 집행유예로 구속 등의 사유가 발생될 수 없으며, 아직 항소 중이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바이다.

4. 판단

가.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령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略式命令이 請求된 者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2) 법원은 “직위해제는 「공무원 임용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임용 행위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권자가 행하는 것이며, 그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어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85누407 1986. 6. 10.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한 직위해제 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되기 전 단계에서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

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위와 같은 직위해제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의2호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3)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등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청구인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불구속 구공판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며, 관련 형사재판 제1심 법원이 청구인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며 청구인에게 징역 8월의 형을 2년간 집행유예 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판결문 등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REDACTED] 대학교 졸업 생으로서 2012년경 시간 강사를 하며 청구인과 서로 알고 지내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수백 회의 문자 메시지 등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이와 같은 혐의는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청구인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청구인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이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인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2019. 8. 1. 자로 청구인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2. 26.

교 원 소 청 심 사 위 원 회

위 원 장 이진석 이진석

상임위원 오석환 오석환

위 원 길인옥 길인옥

위 원 김이경 김이경

위 원 손종학 손종학

위 원 이종근 이종근

위 원 정현미 정현미

위 원 한범수 한범수



위 정본임.

2019. 1. 8.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